

제352회 정례회
2016. 12. 5.(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) 11월 23일 회부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2)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11월 22일
-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23일

3. 제안이유

- 저금리 기조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용자수요는 감소하는 반면, 지역 개발공채 매출은 매년 증가하여 지역개발기금 부채가 증가하는 추세임.
- 자동차 신규 등록에 대해 공채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지역 개발기금 부채를 감축하고, 도민의 공채 매입부담을 경감하여 가 계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 (안 제8조 단서 신설)
 - 신설) 다만,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채 매입을 면제한다.

5. 검토의견

-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주요 수입원은 지역개발채권(이하 “공채”라 함) 발행수입임.

◆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수입현황

(단위 : 천원)

계	공채판매액	융자금 이자수입	융자금 원금회수	전년도 이월액	기타수입
336,262,942 (100%)	155,215,870 (46.2%)	22,926,260 (6.8%)	70,707,800 (21.0%)	86,275,039 (25.7%)	1,137,973 (0.3%)

- 본 조례안은

제8조 후단에 자동차 신규 등록 시 공채 매입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으로,
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에 따라 지방채 매입 대상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바, 면제조항 신설은 법적으로 타당함.
- 현재,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으로 인해, 공채 발행금리는 낮아지고, 이와 연동해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.

◆ 지역개발공채 발행금리 및 융자이율 변화 추이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04.1	2013.8	2015.5	2016.8
공채발행	2.5%	2.0%	1.5%	1.25%
융자이율	3.5%	3.0%	2.5%	2.0%

- 또한, 차량등록, 계약체결 증가 등에 따른 공채(이율 1.25%) 매출증가로 기금 부채는 증가하는 반면, 현재 금리 인하로 인해 지역개발기금 용자 수요(이율 2.0%)는 감소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,

◆ 공채 매출 증가 추이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3	2014	2015
채권 매출	124,792,870	134,752,820	155,215,870

◆ 지역개발기금 부채 증가 추이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3	2014	2015
부채 현황	611,998,985	636,864,128	686,938,861

◆ 지역개발기금 용자수요 감소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4	2015	2016
용자 수요	84,800,000	78,600,000	64,814,000

- 공채 매출액의 58.4%(2015년 기준)를 차지하는 자동차 신규 등록 시 공채 매입의무를 1년 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도민의 공채 매입 부담 경감 효과뿐 아니라, 기금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현재 타 시·도의 공채 매입 면제 현황을 보면, 비사업용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에 한해 4개 지역(대구, 경기, 경남)에서 한시적으로 진행 중이며, 경기도의 경우 2000cc 이상은 50%수준에서 면제하고 있고, 대구, 경남은 5%로 규정하고 있음.

◆ 타 시·도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(자동차 신규 등록)

매입기준		시도	대구	경기	경남
비사업용 승용자동차	1000CC이상	면제	면제	면제	-
	1500CC이상			면제	
	1600CC이상			면제	
	2000CC이상	5%	50%면제	5%	
	7~10인승	-	-	39만원	
	다목적	면제	-	-	

※ 현재 충북은 2000cc 이상은 12%임.

- 따라서, 충북의 신규 등록에 대한 공채매입 면제와 관련해, 타 시·도와 의 형평성과 도민의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채매입 면제 적용 수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또한, 현재 공채 매출현황을 보면, 자동차 신규등록(58.4%), 이전등록(8.2%), 각종 계약체결(23.9%), 기타 허가 및 신고(9.6%)로 분포되어 있는데, 이중 자동차 신규등록만 특정해 한시적 면제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◆ 2015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출현황

(단위 : 천 원)

계	자동차 등록		각종 계약체결	기타 허가 및 신고
	신규등록	이전등록		
155,215,870 (100%)	90,578,690 (58.4%)	12,655,200 (8.2%)	37,040,910 (23.9%)	14,941,070 (9.6%)